

9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복지정책과장 : 하영대 ☎2133-7310 복지정책팀장 : 박진용 ☎7312 담당 : 권혜정 ☎7317

□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구분	요구사항	내용	조치결과
시정 요구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국고보조금 반납 절차 미준수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여 반납하여야 할 국고보조금(8억 5,200만원)을 지방세 징수·반납 등의 절차인 과오납금반환 방식으로 반납처리하여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함	▶ 조치완료 효율적인 재정관리 및 예산 집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계획 대비 과도하게 교부한 국고보조금을 반환 요청한 사안으로, 지방회계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수입금 중 반환하였음 추가경정예산안 또는 차년도 본예산 편성까지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반환하는 방법도 있으나, '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 완료된 시점이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가용 예산 활용을 위해 반환 요청하여 연중 반환함 정상 교부된 국고보조금은 사업 종료 후 정산하여 차년도 예산에 '국고보조금반환금(802-01)'으로 편성하여 반환하고 있으며,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여 진행하겠음
개선 요구	성과보고서 작성 시 관련 지침 준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른 적절한 성과목표치를 설정하도록 개선이 필요 · 복지정책실 : 돌봄서비스(긴급, 일상편의 등) 제공건수	▶ 조치완료 - '22년도 목표 설정 시 코로나19가 언제 완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요 예측이 어려워 목표치가 과소 설정되었으므로, - '23년도 성과목표치는 보다 변동이 적어 수요 예측이 용이한 5대 단기 돌봄서비스 이용자 수로 변경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1인이 일시재가, 동행지원, 식사배달 서비스 신청하는 경우, 당초 3건 → 변경 1명 산정
주의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재원없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	해당 사업은 중앙정부의 가내시액과 실제 교부액 간의 차이로 인하여 재원없는 불용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나, 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적기에 소요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사가 지연이 될 수 밖에 없어 이미 편성된 국고보조금이 전액 교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가 필요	▶ 조치완료 - 국고보조사업 세부계획 변경 등으로 변경 내시가 발생한 경우 추경 편성 및 중앙정부와의 적극 협의를 통해 미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음 - 2023회계연도에는 23년 7월 제1차 추경에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비 감추경 등을 편성하였음